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37

발의연월일: 2020. 8. 18.

발 의 자: 안규백·양정숙·전혜숙

김승원 · 김민철 · 김민석

송옥주 • 민홍철 • 이상직

박용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비지원 등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시·도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 지방위원회가 중복하여 심의를 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방위 원회에서 변경할 경우, 다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 차이행이 장기화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승인"을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0 조제8항 및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재 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 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
정 및 <u>승인</u>) ① ~ ⑦ (생 략)	정 및 <u>승인 등</u>) ① ~ ⑦ (현행
	과 같음)
<u><신 설></u>	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u>거친 것으로 본다.</u>
<u>⑧·⑨</u> (생 략)	<u>⑨</u> ・ <u>⑩</u>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u>으로 본다.</u>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